

1.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2.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용 시설물의 공사설계시행의 적정성 여부 및 그 공법의 타당성
3. 공사추진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여 자문의뢰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의뢰한 사항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2. 도로, 구조, 토질 및 기초, 환경, 교통, 상·하수도, 건설안전, 조경, 건축, 기계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①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단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분야별위원의 전문적 기술성을 고려하여 의결방법은 채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사안에 대하여 전문기술적인 의견의 상충·대립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의결한다.

④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방법) ①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제8조(의견청취등) ①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 자문단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국장이 되고, 서기는 토목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현장출장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및 자문단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  
청원심사보고서

96. 5. 11.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청원인 주소 : 마포구 아현동 604-2  
성명 : 김홍환외 16인
- 나. 소개의원 : 유용봉의원
- 다. 접수일자 : 96.5.2.
- 라. 회부일자 : 96.5.3.
- 마. 상정일자 : 제38회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96.5.11.) 상정, 질의  
토론, 채택

2. 청원요지

본 청원은 마포구 아현동 604번지 일대 지역이 1994년 12월 7일 악몽같은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수십년간 의지하고 살던 집과 가재도구를 순식간에 잃고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604번지 2호가 공유지 분할이 안되고 있으며, 완파지역인 604번지의 일부 호수는 화재가 나지 않은 지역과 같은 필지로 묶여 있는 등 건축상 어려움이 있어 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재건축을 위하여 공유지 분할을 해달라는 내용임.

3. 취지설명의 요지(소개의원 유용봉의원)

1994년 12월 7일 악몽같은 도시가스 폭발사고후 재건축을 하고자 하여도 아현동 604번지 2호가 공유지 분할이 안되고 있으며,

완파지역인 604번지의 일부 호수는 화재가 나지 않은 지역과 같은 필지로 묶여 있는 등 건축상 어려움이 있어 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재건축을 요망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관수)

○동 청원의 내용은 지난 94.12.7. 발생한 아현동 도로공원내 도시가스기지 폭발사고로 인하여 604번지 일대 가옥 74동이 완파된 지역으로 현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나 제반여건상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주변 미관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바 피해주민 중 김홍환외 8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604번지 2호상의 공유토지 247평에 대해서만이라도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나 9명의 공동소유자중에서 1

명이 반대하고 있어 건축행위도 할 수 없으므로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임.

○95.1.5. 제정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적법상으로도 대지최소면적 90m<sup>2</sup>에 미달하는 공유자지분이 대부분으로 현행규정상으론 분할이 어렵다고 사료되나

○동 지역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가스공사 측의 관리부주의가 원인이 된 대형사고 지역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본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은 규정과 절차에 앞서 특별한 정책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김중환위원장대리 :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제의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청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성 강조

9. 심사결과 의견 : 별첨

10. 기타사항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 관한청원에대한의견서

○동 청원의 내용은 지난 94년 12월 7일 발생한 아현동 도로공원내 도시가스 기지 폭발사고로 인하여 불시에 집을 잃은 피해주민들 중 김홍환외 8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247평만이라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가옥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으로

○사고 즉시 본 의회에서는 재해대책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4년 12월 14일부터 95년 4월 12일까지 사고지역에 대한 피해복구활동과 피해보상 그리고 수습방안 등을 조사하여 지난 제28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활동결과보고서에서도 동 지역의 복구방안을 재개발사업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한 사실도

있는 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규정과 절차에 얽매어 방치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되며

-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가스공사측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정신적피해는 물론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당한 동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관계규정과 절차에 의해서만 해결점을 찾지 말고 타지역에 우선하여 집행기관 스스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관계기관은 물론 피해주민들과 긴밀히 협의, 본건이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동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필히 관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